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향
의 결	2020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소 상 공 인 보 호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 ○ ○ (중소벤처기업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서 위임한 ‘재해·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’ 조항에 생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·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‘긴급지원 생계비’를 신설함 (안 제4조의4 제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 . .)

대통령령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4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긴급지원 생계비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4(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4조의4(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자금의 융자 2.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<u><신 설></u>	1·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<u>4. 긴급지원 생계비</u>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3988